고용노동부 | 보도설명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0. 26.(월) 배포 즉시

노동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검사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□ 10.26.(월) 연합뉴스, “위험기계 불합격에도 사용중지 늑장 명령... 노동청, 102건 지연” 등 다수

2. 설명 내용

□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5조 및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따라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·위험기계는 **안전검사 불합격 시 즉시 사업주의 사용**이 **법적으로 금지**되며, 이를 **위반**하여 **사용**할 경우 **과태료 처분 및 형사처벌* 대상**이 됨

* 법 제95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(법 제175조제4항제3호),
규칙 제36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(법 제168조제1호)

□ 고용노동부는 **안전검사 사후조치**의 지연으로 인한 공백을 **원천 차단**하기 위해, 안전검사 불합격 통보 시 관할 지방관서가 **행정조치의 지연**을 **모니터링**할 수 있도록 **전산 연계 시스템(K2B 등) 개선**을 **추진 중**임

○ 보도에 언급된 102건은 **지방관서 내부 행정 절차**(서면 사용중지 명령서 발부 등) 과정에서 **일부 시일이 소요**된 건으로, **자체 종합감사**를 통해 **선제적으로 발굴·적발**하여 **시정 및 사후 조치**를 이미 **완료**하였음

□ 고용노동부는 **불합격 기계**를 **무단 사용**하는 **사업주**에 대해서는 **무관용**의 **원칙**으로 **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**할 방침임

○ 아울러, **위험기계·기구 안전검사 사후관리 체계**를 **지속**적으로 **정비**하여 **노동자**의 **안전 확보**에 **최선**의 **노력**을 다할 계획임

담당부서	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	책임자	과 장	박윤경 (044-202-8850)
		담당자	사무관	권중화 (044-202-885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